복합운송 발전방안 최우선 적극 추진키로
- 2002년도 정기총회 개최 -

우리 협회는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연구 용역한 복합운송 발전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 2월 6일 프레지덴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개최한 2002년도 정기총회에서 2001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에 대해 의결함과 아울러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 개회사를 통해 김정민 회장은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테러 사건의 여파로 국내외 경기가 어려웠으며 금년에도 월드컵 축구대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각종 선거등 국가적인 대행사가 줄을 잇고 있어 경제 상황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복합운송인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대처할 능력이 있음을 피력하고 업체간 과당경쟁, 무분별한 인력스카웃, 과다한 신용거래 및 각종 용역에 대한 댓가를 부과조차도 하지 않는 행위등을 스스로 고쳐 국제물류 전문가로서 더욱 신뢰받는 복합운송업체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 확정된 금년의 사업계획으로는 △운임덤핑규제 대책강구 △통관취급법인자격 허용추진 △복운업체전용 화물터미널 건립추진 △복합운송관련 규정개정추진 △CASS제도 개선추진 △KASA운영 활성화 △남북한운송망 연결에 따른 제사항검토 및 추진 △소기업형 e-Business모델 개발추진 △화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확대(요율인하)와 복합운송관련 법령집 발행등의 홍보출판사업 △연수사업(단과반, 기초반, 중급반, 인턴사원교육, C/S예절교육)등이다.

이에따른 2002년도 수지예산은 회원사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해상/항공전문 고문변호사 선임, 복합운송 인턴사원교육지원, 복합운송 종합법령집 제작등으로 지난해대비 11.8% 증액한 8억6,543만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우리나라 복합운송업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김옥현 광양시장과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으며, KASA발전에 공헌한 (주)아트라스해운 정호성 사장과 복운업계 연수교육에 힘쓴 제일항역(주) 정일환 상무에게 공로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건교부 장관 사업자단체 간담회 개최
- 복운업 통관취급법인 허가대상에 포함토록 건의등 -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 주재로 우리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 화물운송관련 사업자단체장 및 업계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일 메리어트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우리 복운업계 대표로 참석한 최건식 협회 부회장(미쓰이소꼬신총 대표)와 이우종 협회 이사(백스글로벌 대표)는 통관취급법인 허가대상에 복합운송주선업을 포함시켜 줄것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확충 및 재정지원을 건의하여 건교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협조요청

최근 일부 복합운송업체에서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운임을 동종업체는 물론 하주들에게까지 안내하여 운임 수준을 일시에 떨어뜨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자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합운송업계에 따르면 물동량 증가는 아주 미미함에도 복합운송업체는 계속 증가함으로써 화물운송 수주 경쟁이 치열해져 적정 이윤을 무시한 운임(덤핑운임)을 제시하는 사례가 빈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3월 11일 적정 수준을 무시한 운임 제공은 종국에는 복합운송업계가 공멸하는 지름길이므로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무분별한 외상거래 및 운임덤핑을 근절하여 줄 것을 전회원사에 협조요청했다.

운임 장기미납업체 44개사중 21개사 납부

작년 한해동안 장기적으로 운임을 체불하여 우리 협회에 신고된 44개 무역업체중 현재까지 미납된 23개 무역업체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송금이행을 하지 않은 해외포워더 명단도 공개했다.

이는 무역업체와 복합운송업체가 국제간 교역화물의 운송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일부 무역업체들이 국내외 경기 침체등을 이유로 고의적·악의적으로 운임을 장기체불하고 있어 복합운송업체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체불운임을 지불받을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복합운송업계의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장기미납업체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국내장기미납업체 현황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미수금액(원)
1	티에이취	정태환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1-14	02-718-2737	4,273,306
2	삼보씰산업	김제철	인천 서구 당하동 951-2	032-564-6991	1,264,502
3	부산산업기계	류진목	경남 창원시 내동 456-9	055-280-8231	1,456,182
4	유렉스산업	이충남	경기 화성시 정남면 발산 599-4	031-353-8277	2,738,853
5	월드코스모무역	백 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6-15	02-3392-0909	2,099,744
6	청도어패럴	이건일	서울 중구 신당동217-91청평화시장2층 라20호	02-545-8297	2,552,851
7	수지인터내셔날	이복덕	서울 중구 을지로6가18-185	02-545-8297	2,143,265
8	동남	김병태	경기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643	031-964-4968	1,589,437
9	에취원통상	최희역	강서구 등촌3동 680-25 동우빌딩		3,948,638
10	남도농산	우종호	경남 진주시 수정동 19-5	055-748-1714	34,950,996
11	중앙물산	전춘우	경기 양주군 회천읍 을정리 180-8	031-866-1511	13,254,285
12	골덴마린	정호섭	서울 서초구 방배동 583-23	02-592-1068	1,215,778
13	경송무역	강성수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46-5	02-900-1501	408,300
14	평화진흥상사	김 성	서울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1903호	02-755-7609	1,971,300
15	쉬핑라인	김광군	경기 안산시 사1동 1271		1,469,100
16	21세기고려통운	이종익	서울 구로구 구로1동 685-280	02-555-3330	2,728,614
17	원남공업사	성해용	부산 남구 감만동 281-8	051-643-4728	142,918
18	아이쩜	염태순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38	02-3453-4156	875,896
19	뉴라인엔터프라이즈	임진우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6 우경빌딩 203호	02-563-4742	1,833,289
20	코아손	이장빈	경기 양주군 백석동 복지441-442	031-878-2223	5,889,740
21	대풍산업	권철구	경기 시흥시 정왕동 1367-1시화3다101	031-430-5418	6,392,821
	안성산업	김희동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54시화1나		
22	모닝스톤	최중원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421-3		616,983

해외 장기미납 포워딩업체 현황

국 가	상 호	주 소	TEL/FAX	미수금액(USD)
파키스탄	Ocean Air Service Company	Villa #6-k, block-6,p.e.c.h.s Karachi	T.92-21-4535541 F.92-21-4535543	4637.75
콜럼비아	Air Sea Cargo Ltd.	Carrea 45 #1a15 off.201, Colombia	T.572-554-6713 F.572-554-6713	2000
미 국	TLI-Transport Logistics International(Rewico America)	420 Lexington Ave. Suite 1630 New York, NY 10170	T.973-266-7020 F.973-266-7030	6999.5
인 도	Vansa Maritime (I) Pvt.,Ltd.	Vaju Kotak Marg, Ballard Estate Fort, Mumbai 400 038	T.91-22-2702574 F.91-22-2610467	19645.34
방글라데시	Int' l Marine Transport Ltd. (PANL Group)	Road #1, House #140/A, Marium Mansion, C.D.A. R/A, Agrabad, Chittagong	T.880-31-501744 F.880-31-721980	2094.91
파나마	Hanaro Panama	Colon 558 Free zone, Colon R.O.Panama	T.507-445-3646 F.507-441-4521	4390.46
캐나다	Darbert Machinery Company (화주-무역업체)	5205 Tomken Tol, Mississauga Ont. L4W 3N8	T.905-624-8252 F.905-624-5892	11220
필리핀	Aerotrans Freight Forwarding Services	APT. A 353 SGT. Mabagos St. Tondo, Manila	T.632-242-4644 F.632-527-5439	2732.68

국제복합운송관련 종합법령집 발간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국제복합운송업무 수행과 이와 관련한 클레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복합운송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총 망라한 종합법령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복합운송과 관련된 주요 법규로서는 복합운송주선업에 규정하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동법 시행령·동법시행규칙을 비롯하여 상법(제2편 상행위 제8장 운송주선업), 바르샤바조약(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통관 및 세무와 관련된 관세법 및 세법 관련 규정 등이다.

이와함께 주요 고시로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부산광역시 세조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사업무 및 통관업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을 수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현재 주요 법규에 관한 자료를 수집중이며 오는 4월 발간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국제복합운송업 육성방안 강구키로

효율적인 국제물류관리가 글로벌기업에게 경쟁력 제고의 핵심전략이 되고 있어 제3자 물류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복합운송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 협회가 지난해 8월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이정욱)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복합운송업체를 종합물류업체로 지원·육성하여 세계무대로 도약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동량의 꾸준한 증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의 지향으로 동북아 국제물류 관리의 중심지로서 국제물류업과 국제복합운송업이 크게 성장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국제복합운송업의 주요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운송업체의 육성과 관련 복합운송업에 대한 지원·육성정책의 수립이다. 현재의 시·도지사에 의한 등록관리만으로 동업에 대한 정책수립은 불가능하므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육성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종합물류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합운송업체에게 통관업 진출이 허용되게 관세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합운송업체간에 전략적으로 제휴·통합을 유인할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해야 하고 넷째, 금융, 재정적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 복합운송업체 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면서 특화된 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복합운송업체의 해외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제공,해외공동사무실제공, 물류정보망의 구축 등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협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건설교통부, 회원사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육성방안을 장·단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AFA 2002 총회, 서울개최
- 협회, 회원사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복운업계 홍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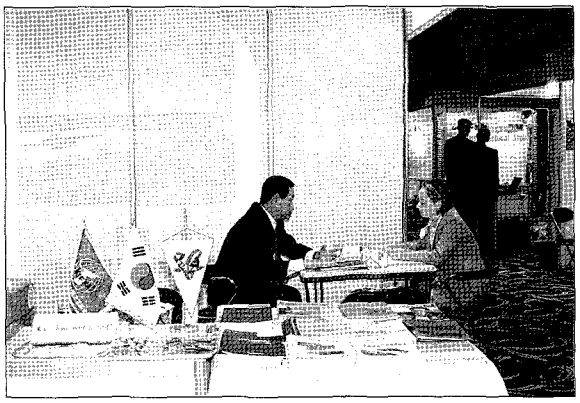

우리협회는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COEX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Air Freight Asia(AFA) 2002 총회 전시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회의기간중 KIFFA 부스를 방문한 국내외 화주 및 회의 참가자에게 우리나라 복합운송업계를 소개했다.

3월20일부터 등록을 시작으로 개최된 AFA총회는 이틀간의 정책토론과 함께 전시회가 개최 됐으며, 각국 항공화물대리점을 비롯하여 항공사, 각국 공항당국, 항공화물운송관련 정부 담당자, 관세청 및 화주 등 25개국, 250여명이 참가했다.

각 사의 홍보를 위한 전시회에서는 미국의 보잉사 및 IATA 등 42개의 전시용 부스가 운영됐으며, 우리협회도 AFA 2002조직위로부터 부스를 임대하여 회원사 및 업계현황을 홍보했다.

특히 IATA 관계자들과 Europort관계자들은 우리 협회 부스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항공화물시장의 잠재력과 업계의 국내현황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AFA 총회는 싱가폴에 소재한 Payload Asia가 주관하였으며 '82년 처음 개최된 이래, 격년으로 아태지역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2000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등 아태지역 항공화물관련 정책회의중 하나이다.

외국항행용역 포함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제외
- 상업서류송달업 -

2002. 3. 1부터 개인사업자와 기업이 상업서류송달업체를 이용할 때 금융기관을 통해 송달료를 송금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송달료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내야 하나 앞으로는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다.

지난 2월 20일 재경부 관계자는 "항공기를 이용한 국제화물 송달업체의 매출을 파악, 세금을 매기기 위해 이용자들이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며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해 송달료를 낼 경우에는 송금명세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영수증 제출의무를 없앴다" 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7조》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생략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 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 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77. 6. 29, 77. 11. 30, 78. 12. 30, 80. 12. 31, 82. 12. 31, 84. 10.5, 85. 12.31, 94. 12. 31, 95. 12. 30, 98. 12. 31 대령15973, 99. 12. 31, 2000. 12. 29]
1. 택시운송·노점·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2의2. 삭제 [90. 12. 31]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 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중 제4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내 복합운송전용창고 건립 추진결의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내 복합운송창고 건립 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지난 3월 5일 우리 협회에서 복합운송창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복운창고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창고사용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개별운영이든 공동복합운영이든 투자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키로 하였으며 또한 빠른 시일내에 투자예치금 납부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어 투자결정을 미루어온 투자희망업는 제사안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며 투자예치금은 투자금액(2억원 이상)의 5%를 납입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동창고 운영방법상의 이견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인천공항공사에서 인천공항내 공동창고 건설방안이 제안(현재 사업타당성 용역의뢰)된 후로 우리 업계 전용창고건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복합운송실무교육 2분기 6회, C/S예절교육 2회 예정
- 해상 · 항공단과반등 총 7개과정 -

복합운송업계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2/4분기 우리 협회의 연수교육은 항공포워딩기초반을 비롯한 7개과정으로 8회 실시할 예정이다.

2002년도 2/4분기 연수교육은 4월 8일부터 시작될 항공포워딩기초반 교육을 시작으로 4월 29일 해상포워딩단과반, 5월 6일 복합운송중급반, 5월 13일 해상포워딩 부산교육, 5월 31일 항공포워딩단과반, 6월 10일 해상포워딩기초반 교육이 각각 실시되며, 또한 회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제고시키고 대하주영업에 있어 다소 도움이 되고자 C/S(Customer Satisfaction)예절교육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4월 1일 4월 2일 및 6월 1일 각각 실시된다.

한편, 1/4분기에는 2월 18일부터 실시된 제17기 해상포워딩단과반, 3월 4일 항공포워딩단과반과정에 각각 51명과 44명이 수강하였고 제41기 해상포워딩기초반(3. 11 ~ 3. 29)교육에는 44명이 참여하였다.

2002년도 2/4분기교육 훈련과정현황

교육 과정	교육 기간	교육시간	수강료(원)	지원금액(고용보험)		비 고
				우선지원	대규모	
C/S예절교육	4. 1, 4. 2	4	10,000	-	-	
항공포워딩기초반	4. 8 ~ 26	60	190,000	158,380	140,780	종합반
해상포워딩단과반	4. 29 ~ 5. 3	20	60,000	60,000	55,760	
복합운송중급반	5. 6 ~ 29	72	230,000	212,860	189,210	종합반
해상포워딩부산교육	5. 13 ~ 17	30	130,000	86,310	76,720	
항공포워딩단과반	5. 31 ~ 6. 7	20	60,000	60,000	55,760	
C/S예절교육	6. 1	4	10,000	-	-	
해상포워딩기초반	6. 10 ~ 28	60	190,000	158,380	140,780	종합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종업원수가 150인 미만인 기업임